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별정직 5급 상당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8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7. 00. ~ 7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의3제8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(중전의 제8호) 및 제10호(중전의 제9호) 중 “제7호”를 각각 “제8호”로 한다.

8.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

별표 1 중 총계 “229”를 “230”으로 하고, 부위원장(차관급) 1 다음에 “별정직 계 1”를 신설하며, 별정직 계 1 다음에 “청년보좌역(5급 상당) 1”를 신설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229”를 “230”으로 하고, 부위원장(차관급) 1 다음에 “별정직 계 1”를 신설하며, 별정직 계 1 다음에 “청년보좌역(5급 상당) 1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~ ⑦ (생 략)	제8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⑧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8.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</u> <u>의 운영지원</u>
<u>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</u> <u>된 사항에 대한 법령 등의 제</u> <u>· 개정</u>	<u>9. ----- 제8호-----</u> ----- -----
<u>9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</u> <u>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</u> <u>위원회의 지도·감독에 관한</u> <u>사항</u>	<u>10. ----- 제8호-----</u> ----- ----- --
<u>10. (생 략)</u>	<u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u>
⑨ ~ ⑪ (생 략)	⑨ ~ ⑪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계	.		.		.		
			229		230	+1	
	.		.		.		
	.		.		.		
<u>별정직 계</u>			<신 설>		1	+1	
<u>청년보좌역(5급 상당)</u>			<신 설>		1	+1	
	.		.		.		
	.		.		.		

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계	.		.		.		
	.		229		230	+1	
	.		.		.		
	.		.		.		
<u>별정직 계</u>			<신 설>		1	+1	
<u>청년보좌역(5급 상당)</u>			<신 설>		1	+1	
	.		.		.		
	.		.		.		